

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-종합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고령(부부 모두 만75세 이상)의 부부 노인가구에게 가사지원,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		
사업비 (당해년도)	9,010,281천원	(국비)6,006,854천원	(시비)3,003,427천원
		기타(예산 외) (국비)3,003,427천원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어르신복지과	김복재 2133-7400	홍순옥 2133-7418	이원조 2133-7413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5,209,242) 7,813,863	(x6,006,854) 9,010,281	(x797,612) 1,196,418	(x15) 15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5,209,242) 7,813,863	(x6,006,854) 9,010,281	(x797,612) 1,196,418	(x15) 15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9,010,281,000원	=	9,010,281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건강 및 소득기준 충족자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(보호의 방법)
 -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
□ 사업내용

- 지원인원 : 3,429명
- 지원대상 :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고령(부부 모두 만75세 이상)의 부부 노인가구
 - (건강기준)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, B
 - (소득기준)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60%이하
- 수행기관 및 종사자 : 314개소, 3,429명
- 서비스내용 : 가사·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
- 업무흐름
 - 대상자 신청 및 선정(자부담비용 : 지정계좌 입금) ⇒ 바우처전자카드 배부
- 분담비율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□ 추진경위

- 07.3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시
- 07.6월 독거어르신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
- 08.12월 기존 2개 사업을 「노인돌봄서비스사업」으로 통합운영
- 10. 2월 가사간병서비스 어르신 이용자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이관
- 11.11~'12.2월 서울시 독거어르신 전수조사 실시
 - 독거어르신 주거, 건강, 소득 등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조사
- 12.11~'13.6월 어르신돌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('13.10월 운영개시)
- 17년 3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(어르신돌봄) 통합구축 후 시범운영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9,010,281	
사업계획 수립 및 분기별	2018.01~2018.12	9,010,281	분기별 보조금 교부

4 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돌봄종합(2,641명)
2016년도	○ 돌봄종합(2,801명)
2017년도	○ 돌봄종합(3,429명)

향후 기대효과

-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판정 어르신(기준 중위소득160%이하자)에게
가사활동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
지원